최초 공고: 2025. 4. 30. / 수정공고: 2026. 5. 29.
수정사유: 학생 정원 조정 등(학칙 개정) 사항 반영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본계획(안)

2026. 5.

KNU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6학년도	2027학년도	비고
전형 일정	가.원서접수(인터넷 접수): 2025년 9월 나.면접구술 및 실기고사: 2025년 11월 다.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가.원서접수(인터넷 접수): 2026년 7월 나.면접구술 및 실기고사: 2026년 8월 다. 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1. 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예정)

가.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2026년 7월**
나. 면접구술 및 실기고사: **2026년 8월**
다. 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 순수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국제처에서 모집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가. 총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구 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최저 국외 재학, 재직, 체류기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3	3/4 이상	3	2/3 이상	2/3 이상

※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상 3년 이상의 국외에서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 외 모집

구 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국외전교육과정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 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입학처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다.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1)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까지로 함.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2) 재학 기간의 인정기준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1년에 2개 학기가 진행되는 학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
-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학기를 재학기간으로 인정
- 국외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국외재학 기간으로 인정하며, 학기 중에 학교를 떠나는 경우는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재학기간 충족여부를 판단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대학은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으로 학생의 재학(졸업), 부모 및 학생의 체류, 국외 근무자 재직/사업/영업 등 지원자격 관련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학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재학 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수업연한 단축은 예외적으로 인정

3) 국외근무자의 자녀(학생)의 국외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및 거주(체류)기준

-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최소 1년 과정)을 포함하여 통산 3년 과정 이상 재학 (연속 · 비연속 무관)
-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날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학교의 재학기간은 보호자인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 내에서 인정하며,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4) 국외근무자의 자녀의 국외근무자 및 보호자 근무기간, 거주(체류)기간 인정기준

역년(Calendar Year)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국외 체류 기간 : 학생의 특례 국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의 2/3 이상 체류 조건
- 국외근무기간 : 재직(경력) 증명서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국외에서 재직(현지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함

※ 국외거주 및 체류 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 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

5) 국외학교 인정기준

-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검정고시,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영어어학연수프로그램) 과정은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정규 학교과정을 병행하고 성적이 산출되었을 경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6)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국외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국내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외국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 (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재학 후, 외국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7) 재학 연한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13)학년 과정)
- 13학년 학제의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전 교육과정 이수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과정을 혼합이수한 경우 아래와 같이 인정함

<table>
<tr><th>학년제</th><th>인정여부 및 인정조건</th><th>비고</th></tr>
<tr><td>10학년 이하</td><td>미인정</td><td rowspan="2">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td></tr>
<tr><td>11학년제</td><td rowspan="2">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td></tr>
<tr><td>12학년제</td><td></td></tr>
<tr><td>13학년 이상</td><td>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td><td></td></tr>
</table>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수

-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북한이탈주민 제외)

□ 복수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전형요소 및 배점

유 형 구 분	모집단위	전 형 요 소		비 고
		면접 구술	실기	
-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 전교육과정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전 모집단위 (예능계 제외)	100		최저학력 기준 : 전형 총점의 60%이상
	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미술학과		100	

4. 심층면접(면접구술고사)

고 사 내 용	배점	평 가 기 준	면 접 방 법
제1영역 (품성 및 표현력)	20점	- 품성과 태도: 면접자세, 답변의 충실도 - 의사소통능력과 표현력: 의사전달능력, 언어구사능력, 어휘의 사용 및 어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험생이 작성한 전공수행 기초능력 평가자료와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2영역 (전공수행 기초능력)	80점	- 전공관련지식 : 지원분야 전공수행을 위한 기초지식 - 문제해결능력 : 문제핵심파악능력, 창의적 사고력과 지식을 문제나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 문제해결 과정의 논리성 등을 평가	
계	100점		

■ 면접 전 1시간 동안 전공수행 기초능력에 대한 면접구술고사자료(모집단위별 전공수행 기초능력 측정 자료로써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작성 후 면접 실시

■ 면접구술위원 3인이 수험생 개인별 면접구술 고사자료를 토대로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을 실시

■ 작성한 면접구술고사자료 내용 및 심층면접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인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 전교육과정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약간명	약간명
	영어영문학과	5	〃	〃
	사학과	3	〃	〃
	철학과	2	〃	〃
	불어불문학과	2	〃	〃
	독어독문학과	2	〃	〃
	중어중문학과	2	〃	〃
	고고인류학과	2	〃	〃
	일어일문학과	2	〃	〃
	한문학과	2	〃	〃
	노어노문학과	2	〃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2	〃	〃
	사회학과	2	〃	〃
	지리학과	2	〃	〃
	문헌정보학과	2	〃	〃
	심리학과	2	〃	〃
	사회복지학부	4	〃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	〃	〃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3	〃	〃
	화학과	3	〃	〃
	생명공학부	7	〃	〃
	생물학과	3	〃	〃
	통계학과	3	〃	〃
	지구시스템과학부	7	〃	〃
	자연과학대학 자율학부	3	〃	〃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11	〃	〃
	경영학부	15	〃	〃
	경상대학 자율학부	4	〃	〃

단과대학	모집단위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 전교육과정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공과대학	금속재료공학과	4	약간명	약간명
	신소재공학과	5	〃	〃
	건축학부(건축학전공)[1]	3	〃	〃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3	〃	〃
	응용화학공학부	6	〃	〃
	고분자공학과	3	〃	〃
	섬유시스템공학과	3	〃	〃
	에너지공학부	6	〃	〃
IT대학	전자공학부	29	〃	〃
	전자공학부[2](인공지능전공)	7	〃	〃
	전기공학과	6	〃	〃
AI대학	인공지능시스템학과	6	〃	〃
	컴퓨터학부(심화컴퓨팅전공)	7	〃	〃
	AI자율학부	4	〃	〃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5	〃	〃
	식물의학과	2	〃	〃
	식품공학부	8	〃	〃
	산림과학·조경학부	6	〃	〃
	원예과학과	3	〃	〃
	바이오섬유소재학과	2	〃	〃
	농업토목공학과	2	〃	〃
	스마트생물산업기계공학과	3	〃	〃
	식품자원경제학과	2	〃	〃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율학부	3	〃	〃
예술대학	음악학과	5	〃	〃
	국악학과	2	〃	〃
	미술학과	4	〃	〃
	디자인학과	2	〃	〃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3	〃	〃
	의류학과	2	〃	〃
	식품영양학과	2	〃	〃
첨단기술융합대학	첨단기술융합대학 자율학부 1	16	〃	〃
	첨단기술융합대학 자율학부 2	9	〃	〃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국외근무자의 자녀		국외 전교육과정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최대선발 가능인원	모집인원	모집인원
행정학부		5	약간명	약간명
생태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2	〃	〃
	산림생태보호학과	2	〃	〃
	곤충생명과학과	2	〃	〃
	관광학과	2	〃	〃
	체육학부(체육학전공)	2	〃	〃
	체육학부(건강운동관리 전공)	2	〃	〃
	축산학과	2	〃	〃
	동물생명공학과	2	〃	〃
	말/특수동물학과	2	〃	〃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과	3	〃	〃
	환경안전공학과	3	〃	〃
	정밀기계공학과	3	〃	〃
	자동차공학부	4	〃	〃
	소프트웨어학과	2	〃	〃
	나노신소재공학과	3	〃	〃
	에너지화학공학과	3	〃	〃
	식품외식산업학과	4	〃	〃
	섬유패션디자인학부(섬유공학전공)	2	〃	〃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3	〃	〃
	위치정보시스템학과	2	〃	〃
	스마트플랜트공학과	2	〃	〃
자율미래인재학부		5	〃	〃

※ 1.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3. 사범대학의 경우, 정원외 모집인원은 교육부의 「교원 양성기관 정원운영 지침」에 따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사범대학 전 모집단위는 선발가능한 정원외 모집인원을 수시모집 전형(정원외: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등 대상자전형)에서 모두 선발할 예정이므로 본 전형에서 모집하지 않음(입학정원 제한없는 정원외 모집(국외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전형 포함)
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1) 건축학부(건축학전공) 수업연한은 5년제임

2) 전자공학부(인공지능전공)은 부산대학교 AI대학 AI컴퓨터공학부(인공지능전공)과 공동학과로 운영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경북대-부산대 공동학위 또는 경북대 단독 학위를 선택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본교서식)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초·중·고 재학증명서 ⑤ 초·중·고 성적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⑥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⑦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⑧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⑨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⑩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⑪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⑫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해당)* 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 ⑭ 국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국외직접투자 신고(승인)서(국외파견 재직자 해당)
국외 전교육과정 이수자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본교서식) ③ 초·중·고 재학증명서 ④ 초·중·고 성적증명서 ⑤ 초·중·고 졸업증명서 ⑥ 출입국사실증명서 ⑦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 ⑧ 신분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본교서식) ③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④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를 추가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해당국 거주(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국 비자, 부동산 계약서, 보험증서, 차량 렌트증서, 개인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원본서류 또는 공증받은 서류로 추가 제출